

2017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6억 4천 6백만원
- 징수결정액 : 24억 1천 1백만원
- 실제수납액 : 23억 8백만원
- 미 수 납 액 : 1억 3백만원
- 결 손 처 분 : 0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억 3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5.7%(전년도 92.2%)임.

〈 2017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646	2,411	2,308	103	95.7
세외수입	646	2,221	2,118	103	95.7
경상적 세외수입	540	703	701	2	99.0
공유재산임대료	540	626	626	0	100.0
기타사용료	0	53	53	0	100.0
기타사업수입	0	20	18	2	90.0
기타이자수입	0	0	0	0	0
임시적 세외수입	105	1,518	1,418	100	93.4
변상금	105	126	115	10	91.2
시·도비반환금수입	0	712	625	87	87.7
그외수입	0	678	676	2	99.7
지방교부세	0	190	190	0	100.0
지방교부세	0	190	190	0	10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1,043억 2천 4백만원
- 예산증감 : 126억 3천 8백만원
- 예산현액 : 1,169억 6천 2백만원
- 지출액 : 990억 7천 2백만원
- 이월액 : 82억 7천 5백만원
- 불용액 : 96억 1천 5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8.2%(전년도 13.6%)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6억 2천 9백만원, 예산절감 3억 1천만원, 예산집행잔액 76억 7천 5백만원임.

< 2017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116,962	99,072	8,275	9,615	8.2
사업예산계	116,962	99,072	8,275	9,615	8.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41,486	33,531	4,813	3,142	7.6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41,486	33,531	4,813	3,142	7.6
서울혁신파크 운영	9,785	7,903	0	1,883	19.2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28,362	22,578	4,682	1,103	3.9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978	890	0	88	9.0
공유서울 확산	1,284	1,128	132	25	1.9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816	777	0	38	4.7
지식공유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69	63	0	6	8.7
중랑 마을 나눔가게 운영(주민참여)	8	8	0	0	0
송파 생활공구 도서관 운영(주민참여)	54	54	0	0	0
구로 아이용품 공유사업(주민참여)	35	35	0	0	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구로 생활공구 도서관 운영(주민참여)	36	36	0	0	0
	강서 생활공구 도서관 운영(주민참여)	60	60	0	0	0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5,431	4,806	0	625	11.5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5,382	4,762	0	620	11.5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663	391	0	273	41.2
	서울시 NPO지원센터 확대 운영	2,381	2,096	0	286	12.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2,338	2,276	0	62	2.7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 조성	33,455	30,813	1,406	1,235	3.7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33,439	30,798	1,406	1,235	3.7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8,854	7,220	1,406	228	2.6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279	265	0	14	5.0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5,604	5,604	0	0	0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5,218	4,908	0	310	5.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	5,978	5,855	0	123	2.1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4,000	3,641	0	359	9.0
	우리마을 공간조성(주민참여)	36	36	0	0	0
	YouUs 공간 조성(주민참여)	42	42	0	0	0
	합정사랑방 공간 조성(주민참여)	31	31	0	0	0
	깨끗한 마을 조성(주민참여)	5	5	0	0	0
	시민자치학교 지원(주민참여)	5	5	0	0	0
	명륜동과 혜화동 주민모임지원(주민참여)	9	9	0	0	0
	징검다리 마을학교 지원(주민참여)	102	102	0	0	0
	글로벌인재지원센터 운영(주민참여)	120	120	0	0	0
	오순도순 마을쉼터 조성(주민참여)	40	40	0	0	0
	복합 허브공간 조성(주민참여)	100	100	0	0	0
	마을사랑방 조성(주민참여)	150	150	0	0	0
	책을 품은 거리 조성(주민참여)	100	100	0	0	0
	마을주도 방과후 맞춤형돌봄 마을학교 조성(주민참여)	250	250	0	0	0
	소외된 이웃 찾기(주민참여)	85	85	0	0	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우리동네 행복발전소 한올타리 조성(주민참여)	200	0	0	200	100.0
주민 문화공간 조성(주민참여)	50	50	0	0	0
청년 마을 인터십 프로젝트(주민참여)	220	220	0	0	0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지원(동주민참여)	2,500	2,500	0	0	0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및 소통강화	15	15	0	0	0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확산	15	15	0	0	0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34,532	28,106	2,012	4,414	12.8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권익증진	24,816	21,974	0	2,842	11.5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432	1,420	0	11	0.8
청년층 긴급생활안정 및 대환대출 자 금지원	603	262	0	341	56.6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120	120	0	0	0
서울 청년활동 보장	15,091	14,210	0	881	5.8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2,000	1,982	0	18	0.9
G밸리 청년 직장인 동아리 활동 지원(주민참여)	70	70	0	0	0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주민참여)	500	482	0	18	3.6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5,000	3,426	0	1,574	31.5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9,716	6,133	2,012	1,572	16.2
서울특별시 청년 허브 운영	4,539	4,041	0	498	11.0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259	256	0	3	1.2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3,406	1,357	1,326	722	21.2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	197	197	0	0	0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동북권- 주민참여)	494	72	330	92	18.6
청년 야호! 페스티벌 개최(주민참여)	22	22	0	0	0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800	187	356	257	32.1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376	325	0	51	13.6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376	325	0	51	13.6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127	94	0	34	26.8
갈등영향분석 실시	50	44	0	6	12.0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9	8	0	1	11.1
갈등관리 역량강화	81	78	0	3	3.7
갈등 현안토론·학술회의	109	101	0	7	6.4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1,386	1,224	43	119	8.6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1,386	1,224	43	119	8.6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61	161	0	0	0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90	66	0	24	26.7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30	28	0	2	6.7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456	405	0	51	11.2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81	79	0	2	2.5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287	225	43	19	6.6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8	7	0	1	12.5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68	58	0	10	14.7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33	31	0	2	6.1
서울 인권 컨퍼런스	131	125	0	6	4.6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27	27	0	0	0
인권영화제 개최(주민참여)	15	13	0	2	13.3
일 반 예 산 계	343	311	0	32	9.3
기 본 경 비	343	311	0	32	9.3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동대문구 마을활력소(휘경지하보도) 조성과정 중 추가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내에서 통계목간 전용으로

1억원

- 사회혁신과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써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내에서 통계목 간 전용으로

3억 5천만원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조성예산(시설비) 부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 내에서 통계목 간 전용으로

4천 3백만원 등

총 4건, 4억 9천 3백만원을 전용하였음.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조성예산(시설비) 부족으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시설비) 사업에서

8천만원

- 무중력지대 성북 신축 및 공간조성에 따른 관련 소요경비(감리비) 지출을 위하여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동북권-주민참여)」 (시설비 ⇒ 감리비)사업에서

6백만원

-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청년교류 공간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 사무관리비)사업에서

1억 5천만원

-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청년교류 공간 설치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 감리비)사업에서

8백만원 등

총 4건, 2억 4천 4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19건 82억 7천 5백만원

○ 명시이월

- 마을배움터 설계용역 지연에 따라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중
시설비 8억 5천 3백만원
감리비 2천 9백만원
시설부대비 3천 5백만원

- 무중력지대 시설 물품 구매 지연에 따라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사업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7천만원 등

총 4건, 11억 8천 8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음.

○ 사고이월

- 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 준공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중
시설비 44억 8천 2백만원
감리비 1억 8천만원
시설부대비 2천만원

- 공유종합플랫폼 재개편 계약 연장에 따라 「공유서울 확산」 사업 중
사무관리비 3천 9백만원
공공운영비 9천 3백만원

- 마을배움터 설계용역 지연에 따라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중
시설비 4억 8천 1백만원
감리비 7백만원

- 무중력지대 설계변경에 따른 준공일 지연으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사업 중
 - 사무관리비 2천 2백만원
 - 시설비 10억 1천 8백만원
 - 감리비 1천 6백만원
- 설계변경에 따른 준공일 지연으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동북권-주민참여) 사업 중
 - 시설비 2억 3천만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원
- 설계변경에 따른 준공일 지연으로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운영」 사업 중
 - 시설비 2억 9천만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6천 6백만원
- 재입찰에 따른 계약지연으로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업 중
 - 사무관리비 4천 3백만원 등

총 15건, 70억 8천 7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7년도말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관리 공유재산

- 토지 95,109 m^2 3,069억 4천 8백만원,
 - 건물 54,042 m^2 408억 7천 7백만원,
 - 기타 2건 5억 2천 2백만원,
- 총 3,483억 4천만원 상당의 금액임.

〈 2017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328,070	20,279	0	348,348	
행정 재산	계	327,548	20,279	0	347,826
	공용재산	327,548	20,279	0	347,826
	공공용재산	0	0	0	0
	기업용재산	0	0	0	0
	보존재산	0	0	0	0
일반재산	522	0	0	522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7년도말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55개, 현재액 8천 9백 87만원임.

〈 2017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16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53	2	0	2	0	0	0	55
	금액	81	9	0	9	0	0	0	90
일반회계	수량	53	2	0	2	0	0	0	55
	금액	81	9	0	9	0	0	0	90

II . 검토의견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예산운용 및 미수납액 저감 대책수립 요망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5.7%로 전년도(92.2%)보다 세입징수실적이 향상된 것처럼 보이나,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 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이나 ‘그외수입’과 같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조치(시·도비반환금 6억 2천 4백만원, 그 외수입 6억 7천 6백만원)한 예산과목이 있는가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1억 6백만원) 대비 실제수납액(1억1천 6백만원) 비율(1,337.7%)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
- 특히,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경우에도 예산액(5억4천만원) 대비 징수결정액(7억3백만원) 차이가(29.8%p) 과도하게 나타남바,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기법에 따르지 않고 비과학적인 세입예산편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음.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률 (C/B)	예산현액대비 수납률 (C/A)
합 계	646	2,412	2,308	102	95.7	357.2
경상적세외수입	540	703	701	2	99.7	129.8
공유재산임대료 등	540	703	701	2	99.7	129.8
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	106	1,518	1,418	100	93.4	1,337.7
변상금및위약금	106	126	116	10	92.0	109.4
시도비반환금수입	0	713	625	88	87.6	0
그외수입	0	679	677	2	99.7	0
지방교부세	0	190	190	0	100.0	0
지방교부세	0	190	190	0	100.0	0

-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대부분은 서울혁신센터와 청년청 입주단체의 사용료 등이며, 서울혁신파크에는 133개의 혁신단체와 39개의 청년 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2018년 5월 기준으로 사용료, 관리비 등의 체납총액이 약 4천만원에 달하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혁신단체 등의 사용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혁신파크 입주단체 체납액('18.5월 기준)
 혁신센터 38개 단체 3천 9백만원, 청년청 12개 단체 104만원

-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사업수입' 등 2014년 이래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2018회계연도는 일부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타이자수입'의 경우는 여전히 세입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음.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1,420,076	105,746	1,489,909	105,746	859,957	0	824,814	0	330,877
기타사업 수입	9,100	0	18,063	0	1,820	0	0	0	
기타 사용료	579,038	0	53,925	0	48,750	0	0	0	189,364
기타 이자수입	0	0	296	0	26	0	161	0	0
변상금 및 위약금	111,670	105,746	115,923	105,746	108,365	0	320,868	0	29,782
시도비반 환금수입	365,000	0	624,891	0	342,935	0	346,312		76,592
그외수입	355,268	0	676,811	0	358,087	0	157,634		35,139

- 서울혁신기획관은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 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중 137건에 1억 3백만원이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되고 있는바, 이는 전년도(168건, 1억1천5백만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여전히 미수납건수와 미수납 규모가 큰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4년간 미수납액 금액별 건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년	구분	계	금액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014	건수	18	6	6	3	2	1	0
	금액	42,232	175	2,117	6,160	13,779	20,000	0
2015	건수	97	51	27	8	6	4	1
	금액	466,116	2,128	11,451	17,149	43,669	235,279	156,4390
2016	건수	168	98	54	10	3	3	0
	금액	115,779	4,016	15,100	20,649	22,191	53,821	0
2017	건수	137	74	47	9	4	3	0
	금액	102,903	3,725	13,671	18,647	22,804	44,053	0

2. 세출결산

가.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문제

- 서울혁신기획관의 2017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4건에 4억 9천 3백만원, 변경사용은 4건에 2억 4천 4백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0,000	△ 100,000		2017- 08-25	150,000	50,000	100,000 (66.7%)
	자치단체 자본보조	6,873,000		100,000		6,973,000	6,973,000	0
창년 프로젝트 투자 사업	민간 경상사업보조	5,000,000	△ 350,000		2017- 04-03	4,650,000	3,091,602	1,558,397 (33.5%)
	사무관리비			350,000		350,000	334,264	15,736 (4.5%)
창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825,780	△ 27,000		2017- 11-02	782,780	553,762	229,017 (29.3%)
	사무관리비	272,000		27,000		299,000	169,512	107,348 (43.3%)
	민간위탁금	798,780	△ 16,000		2017- 11-02	782,780	553,762	229,017 (29.3%)
	공공운영비	180,000		16,000		196,000	3,819	192,180 (98.1%)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 목		감액	증액	승인일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운영	자산및 물품 취득비	370,000	△ 80,000		2017- 11-02	290,000	0	20,000 (6.9%)	
	시설비	1,318,000		80,000		1,398,000	250,319	130,012 (9.3%)	사고이월 1,017,668 (88.7%)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 주민참여)	시설비	300,000	△ 6,000		2017- 04-04	294,000	64,110	102 (0%)	사고이월 229,786 (99.9%)
	감라비			6,000		6,000	0	6,000 (100.0%)	
서울시 청년 교류공간 설치운영	공공 운영비	200,000	△ 150,000		2017- 04-04	50,000	1,704	48,295 (96.6%)	
	사무 관리비	50,000		150,000		200,000	167,463	32,536 (16.3%)	
서울시 청년 교류공간 설치운영	자산및 물품 취득비	150,000	△ 8,000		2017- 04-04	142,000	0	75,858 (53.4%)	사고이월 66,141 (46.6%)
	감라비			8,000		8,000	0	8,000 (100%)	

1)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예산 전용

①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의 통계목간 전용

-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은 민·관의 사회적 협력관계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창업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 당시 ‘민간경상사업보조’로만 50억원을 편성했던 사업임.

- 동 사업은 예산안 심사시에도 ‘사무관리비’ 미편성에 대하여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없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졸속사업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의회가 우려한바 대로 동 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3억 5천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 이후에도 15억 5천 8백만원(33.5%)의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하겠음.

〈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전용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청년 프로젝트 투자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5,000,000	△ 350,000		2017- 04-03	4,650,000	3,091,602	1,558,397 (33.5%)
	사무관리비			350,000		350,000	334,264	15,736 (4.5%)

2) 반복적인 변경 사용, 예산 전용과 과도한 불용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은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지원하여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동대문구 마을활력소에 추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동 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원을 전용하였음.
- 동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 이후에도 1억원(66.7%)의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했다고 하겠음.

〈 예산의 전용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0,000	△ 100,000		2017- 08-25	150,000	50,000	100,000 (66.7%)
	자치단체 자본보조	6,873,000		100,000		6,973,000	6,973,000	-

○ 또한, 2016회계연도에도 “근린생태계 조성(거버넌스)” 중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억원을 변경사용하였는바, 이러한 반복적인 전용 및 변경사용은 동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계획없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예산의 변경사용(2016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근린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자치단체 자본보조	300,000	△300,000		2016-09-09	0	0	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4,270,000		300,000		4,570,000	4,570,000	0

- 동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집행내역(5천만원)을 살펴보면, 은평 한옥마을 마을활력소 ‘사업운영비’로 3천 5백만원, 관악 행복나무 마을 활력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은평 한옥마을 마을활력소는 개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운영비’(3천 5백만원)를 지원한 것은 모순인바, 사업 운영비 지원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관악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비는 철저한 사업 준비 미흡으로 민간위탁 협약을 해지하게 되어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자치구별 마을활력소 거점공간(11개소)을 조성하려는 예산으로 자치구에 예산만 교부하고 거점공간 조성 관련 관리는 부실하게 이루어져 현재까지도 자치구에 거점공간이 완공되지 못한 상황임.

(단위: 천원)

	2017년 당초 계획		2017년 집행실적	집행잔액	개소 여부
연번	편성예산	6, 873,000	6,973,000(1억원 전용)	미정산	
1	구로 마을활력소	420,000	420,000	조성중	미개소
2	은평 마을활력소	200,000	200,000	조성중	미개소
3	은평한옥마을 마을활력소	180,000	180,000	조성중 35백만원 경상보조	미개소
4	동대문 마을활력소	150,000	150,000	조성중	미개소
5	동대문(휘경동)마을활력소	300,000	300,000	조성중	미개소
6	동작(신대방동)마을활력소	573,000	573,000	조성중	미개소
7	성동(마장동)마을활력소	500,000	500,000	'17.8월 완료 잔액집행	미개소
8	송파(문정동)마을활력소	50,000	50,000	'17.9월 완료 263,770원 잔액반환	미개소
9	금천 마을활력소	2,000,000	2,000,000	조성중	미개소
10	구로(구로4동)마을활력소	1,500,000	1,500,000	조성중	미개소
11	성북 마을활력소	1,000,000	1,000,000	조성중	미개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보고 받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금의 차액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의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③ 생략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생략

- 한편, 동 사업 중 은평한옥마을 마을활력소의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살펴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출할 수 없는 사업내용이 대부분인바, 서울혁신기획관의 자의적이고 편법적인 예산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조금 환수를 포함한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 및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참고 1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활성화 사업 계획서).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명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활성화				
신 청 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기 관 명	은평구청	전화번호	02-351-6506	
	대표자명	김우영			
교부신청금액	금이억일천오백만원 (₩ 215,000,000)			희망 교부시 기	상반기(2월)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시비 (은평한옥마을 마을활력소)	시비 (마을배움터 사업비 지원)	구비	기타
	215,000	180,000	35,000	0	0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기관(단체) : 은평구청 ○ 사업 목적 : 상징성·특화된 사업추진으로 타 마을회관과 차별화를 구축하고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 공간 조성 ○ 사업 진행 기간 : 2017. 3월 ~ 2017. 12월 ○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써 한옥카페, 한옥전시홀, 행복키친 등으로 조성 및 주민대상 프로그램 운영. 				
<p>「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17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0px;">서울특별시장 귀하</p>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 서울혁신기획관은 마을활력소를 매년 조성(2016년 행복나무마을활력소(관악), 천연용달샘 마을활력소(서대문))하고 있으나, 행복나무마을활력소는 2017년 민간위탁 협약을 해지하였고 지속적으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임.
- 특히,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조성하는 마을활력소의 경우에도 그 운영 방식 및 지속적인 활력소 활용계획은 미비한 상태로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공간을 조성하는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마을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하는 지역공동체담당관은 타 실·국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마을활력소가 타 실·국에서 조성하는 공간과 인접해 있지는 않은지,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 등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마을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임.

※ 현재, 마을 조성 사업은 각 실국별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서울혁신기획관은 공간조성 수요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상위계획(마스터플랜)을 설계하여 마을 활력소를 조성해야 할 것이며, 주먹구구식·누더기식 사업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해당 지역에 유사한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등의 사전 조사와 수요 파악 등을 통해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마을활력소 등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대한 예산 지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동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이미 조성한 공간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구와의 갈등 소지가 없도록 마을활력소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3) 불충분한 수요 분석 등으로 인한 전용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상의 문제로 동 사업 중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각각 2천 7백만원과 1천 6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그러나, 1천 6백만원을 증액 전용한 ‘공공운영비’는 1억 9천 2백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는바, 전용 자체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공공운영비’의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98.1%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및 방만한 예산 집행 사례라고 할 것임.
- 한편, 2천 7백만원을 증액 전용한 ‘사무관리비’의 경우도 1억 7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전용이 불필요했음을 알 수 있으며 ‘사무관리비’ 중 일부는 사고이월(2천 2백만원)시켰는바,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임.
- 또한, 과다 편성된 민간위탁금 예산의 불용 규모(2억 2천만원, 29.3%)를 줄이기 위한 편법적인 예산 집행으로도 보이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의 관계자에 대한 책임있는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청년공간 무중력지 대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825,780	△ 27,000			782,780	553,762	229,017 (29.3%)	
	사무관리비	272,000		27,000	2017-11-02	299,000	169,512	107,348 (43.3%)	22,139 (7.4%) (사고 이월)
	민간위탁금	798,780	△ 16,000			782,780	553,762	229,017 (29.3%)	
	공공운영비	180,000		16,000	2017-11-02	196,000	3,819	192,180 (98.1%)	

4) 사전 사업추진 계획 미흡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한 변경사용 이후 과도한 사고이월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의 ‘시설비(8천만원)’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동북권-주민참여)” 사업의 ‘감리비(6백만원)’,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1억 5천만원)’, ‘감리비(8백만원)’를 변경사용했으나, 변경사용한 예산 전액이(‘감리비(6백만원)’, ‘감리비(8백만원)’) 불용처리되었고, 일부는 불용 규모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등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소요예산 이상으로 과도하게 변경사용을 하였으며,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의 경우는 변경사용한 이후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는 2억 7천만원을 명사이월하였고, ‘시설비’는 10억 1천 7백만원을 사고이월처리하였음.
- 또한, 변경사용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동북권-주민참여)” 의 ‘시설비’는 거의 전액을 사고이월(2억 2천 9백만원)시켰고,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운영” 의 경우는 타 예산으로 변경사용한 이후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천 6백만원(46.6%)을 사고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전액(7천 5백만원, 53.4%) 불용처리하였음.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동계 목		감액	증액	승인일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운영	자산및 물품 취득비	370,000	△80,000		2017- 11-02	290,000	0	20,000 (6.9%)	명사이월 270,000 (93.1%)
	시설비	1,318,000		80,000		1,398,000	250,319	130,012 (9.3%)	사고이월 1,017,668 (88.7%)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시설비	300,000	△6,000		2017- 04-04	294,000	64,110	102 (0%)	사고이월 229,786 (99.9%)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 목		감액	증액	승인일				
설치 및 운영 (동북권- 주민참여)	감리비			6,000		6,000	0	6,000 (100.0%)	
서울시 청년 교류공간 설치운영	공공 운영비	200,000	△ 150,000		2017- 04-04	50,000	1,704	48,295 (96.6%)	
	사무 관리비	50,000		150,000		200,000	167,463	32,536 (16.3%)	
	자산및 물품 취득비	150,000	△ 8,000		2017- 04-04	142,000	0	75,858 (53.4%)	사고이월 66,141 (46.6%)
	감리비			8,000		8,000	0	8,000 (100%)	

-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 공간 사업을 정교하고 완결성 높게 설계했어야 함에도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불성실한 집행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는바, 이는 과도한 회계질서문란에 해당하는 예산집행행태라고 할 것임.
- 또한, 예산의 변경사용, 과도한 불용 및 이월로 청년 공간 사업에 차질을 빚은바,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불성실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 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성적이고 주먹구구식 전용 및 변경사용 지양을 위한 서울혁신기획관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행정 편의적인 사고이월 등 지양 필요

○ 서울혁신기획관의 2017년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등 총 19건에 82억 7천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으며, 이월사업 중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등 총 4건은 전년도에 이어 동일사업에 있어 사고이월 등이 반복되고 있음.

〈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㉒	다음연도 이월액 ^㉓		집행잔액 ㉑-㉒-㉓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26,822,252	24,769,554	21,633,475		4,481,620	707,157	
	감리비	1,497,203	1,115,859	935,623		180,236	381,344	
	시설 부대비	42,558	8,450	8,450		20,000	14,108	
공유서울 확산	사무 관리비	357,970	347,841	309,286		38,555	10,128	
	공공 운영비	100,000	92,945			92,945	7,055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비	1,467,933	655,925	82,534	853,512	480,959	50,926	
	감리비	51,863	7,100		29,863	7,100	14,900	
	시설 부대비	50,000			35,000		15,000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무 관리비	299,000	191,651	169,512		22,139	107,348	
	시설비	1,398,000	1,267,987	250,319		1,017,668	130,012	변경사용후 사고이월
	감리비	60,000	16,218			16,218	43,78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90,000			270,000		20,000	변경사용후 명시이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시설비	294,000	293,897	64,110		229,786	102	변경사용후 사고이월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㉒	다음연도 이월액 ^㉓		집행잔액 ㉑-㉒-㉓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동북권 주민참여)	자산 및 부품 취득비	100,000	99,974		99,974	25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시설비	400,000	308,153	17,848	290,305	91,846		
	자산 및 부품 취득비	142,000	66,141		66,141	75,858	변경사용후 사고이월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무 관리비	197,025	182,265	139,515	42,750	14,759		

○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은 2016년에 상당부분을 명시이월(96억4천2백만원) 및 사고이월(16억8천1백만원)시켰으며, 집행잔액(2억2천4백만원) 또한 과도하게 발생하였음.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2016년, 2017년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㉒	다음연도 이월액 ^㉓		집행잔액 ㉑-㉒-㉓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 16 년 (추경)	계		17,978,801	8,755,617	6,429,985	9,642,981	1,681,497	224,338
	서울혁신 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17,296,470	8,099,090	6,372,458	9,031,660	1,681,497	210,855
		감리비	646,500	644,068	45,068	599,000	0	2,432
		시설 부대비	35,831	12,459	12,459	12,321	0	11,051
20 17 년	계		28,362,013	25,893,863	22,577,548	0	4,681,856	1,102,609
	서울혁신 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26,822,252	24,769,554	21,633,475	0	4,481,620	707,157
		감리비	1,497,203	1,115,859	935,623	0	180,236	381,344
		시설 부대비	42,558	8,450	8,450	0	20,000	14,108

-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집행 현황(2016회계연도→2017회계연도)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잔액은 4천4백만원, 명시이월 예산의 집행잔액은 2억 2천4백만원이며, 2017년 본예산의 집행잔액은 8억 3천 4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도 재차 사고이월한 규모는 46억 8천 2백만원 수준임.

〈명시이월, 사고이월(2016회계연도→2017회계연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시설비	사고이월예산	1,681,496	1,636,582	44,914
	명시이월예산	9,031,660	8,816,123	215,536
	소계	10,713,156	10,452,706	260,450
감리비	명시이월예산	599,000	599,000	0
시설부대비	명시이월예산	12,321	3,650	8,671
합계		11,324,477	11,055,356	269,121

- 동 사업은 2017년도에도 상당부분을 사고이월(46억8천1백만원)시켰으며, 집행잔액(11억2백만원) 또한 과도하게 발생하였는바, 예산 편성시 철저한 정책설계 없이 시장의 역점사업의 예산확보에만 주력하는 부서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하겠음.
 - 또한, 동 사업은 업무 보고시 마다 준공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준공이후에도 부실공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등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사업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바,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서울시민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도록 성실한 사업집행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은 지역내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소유권자와의 협의 문제로 성미산 마을활력소 부지를 2016년 11월에 취득하게 됨에 따라 공사가 순차적으로 늦어져 5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처리하였음.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㉒	다음연도 이월액 ^㉓		집행 잔액 ㉑-㉒- ㉓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6년	계		3,978,000	3,421,180	3,421,180	550,000	0	6,82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비	3,941,000	3,421,180	3,421,180	513,000		6,82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감리비	22,000	0	0	22,000		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 부대비	15,000	0	0	15,000		0

○ 명시이월 집행 현황(2016회계연도→2017회계연도)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예산 (5억 5천만원) 중 ‘시설비’ 일부(3천 1백만원)만 집행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전체 미집행하여 불용처리(각각 1,490만원(67.7%), 1,500만원(100%)) 및 사고이월시켜(710만원) 총 4억 8천 8백만원을 2018년도로 사고이월시켰음.

<명시이월(2016회계연도→2017회계연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2018년도 사고이월액
시설비	명시이월 예산	513,000	31,298	743	480,959
감리비	명시이월 예산	22,000	0	14,900	7,100
시설부 대비	명시이월 예산	15,000	0	15,000	0
합계		55,000	31,298	30,643	488,059

○ 동 사업은 2017년 위원회의 현장점검 결과, 마포 마을활력소 부지로 매입 (2017.9.28.)한 부동산은 1층에 일반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재산으로, 리모델링 및 공간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자치부, 2016년)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은 절차상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재산 업무편람」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나. 사권의 의의
 1)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관리인 공권에 대응되는 것으로 사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함.
 2) 재산에 대한 사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

다. 사권의 종류
 1) 기본적으로 민법상 물건으로 함.
 ○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2) **취득하는 재산이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배타적으로 사용·처분의 제한을 받은 경우도 사권으로 볼 수 있음.**
 ○ 인·허가, 면허 등에 따라 사인이 이익을 보는 권리,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행위, **임차인이 있는 재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행정목적, 사용용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사권으로 볼 수 있음.**

- 서울혁신기획관은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편법적으로 매입하고 마을활력소 조성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예산 편성도 되어있지 않은 “영업손실보상”을 임대료와 상계하는 방식으로(3개월, 429만원) 추진하였는바, 이는 당초 적법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보여짐.
 ※ 참고 2 마포 마을활력소 조성공사 피해자(마포 마을활력소 내에 위치해 있는 상가 (제이피커피로스터스, 대표 박선혁) 보상 조치 참조
- 또한, 동 보상조치는 「지방자치법」 제39조(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나,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며,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모든 세입과 세출 일체를 예산에 편입·계상하는 예산 제도)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서울혁신기획관은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행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향후 임차 문제 해소를 포함한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책임있는 대처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1층 일반카페의 계약 기간(2016.8.1.~2018.7.31.) 만료후 임차인이 불법 점거시 명도소송 등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임.

- 2017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와 길음중학교 내 마을배움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설계용역 지연과 학교내 마을활력소 설치에 대한 교육청과의 의견 대립 등 철저한 사전 준비 미흡으로 9억 1천 8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음.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㉒	다음연도 이월액 ㉓		집행잔액 ㉑-㉒-㉓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7 년	계		1,569,796	663,025	82,534	918,375	488,059	80,826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비	1,467,933	655,925	82,534	853,512	480,959	50,926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감리비	51,863	7,100	0	29,863	7,100	14,90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 부대비	50,000	0	0	35,000	0	15,000

- 길음중학교 내에 마을배움터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을 통한 나눔터와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마을배움터의 목적과 학교 본연의 목적인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권 보장’과 충돌하는바, 입지 선정의 부적절성을 이미 지적한바 있으며, 그러한 우려에도 특정 학교내 마을배움터를 추진하는 것은 특혜시비 및 비합리적인 정책 수단으로 인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학교내 무단 침입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현실에서 동 배움터가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혁신기획관의 책임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동북권-주민참여)”사업은 무중력지대 조성공간의 부지 변경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2016년에 4억 9천 4백만원을 명시이월처리하였고, 2017년 재차 사고이월(시설비 2억 2천 9백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천 9백만원)시켰음.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 원인 행위액	지출액 ㉒	다음연도 이월액 ^㉓		집행 잔액 ㉑-㉒- ㉓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6 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 주민참여)	사무 관리비	100,000	5,415	5,415	94,000	0	585	
		시설비	300,000	0	0	300,000	0	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00	0	0	100,000	0	0	
2017 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 주민참여)	시설비	294,000	293,897	64,110	0	229,788	102	변경비용 6백만원후 사고이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00	99,974	0	0	99,974	25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의 마을활력소 조성사업과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및 운영” 사업의 경우는 사업추진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지 취득 지연 및 입지 등의 변경, 사전 협의 미흡 등으로 인해 예산을 반복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고 있는바, 이는 동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상위계획)이 설계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 서울혁신기획관은 마을활력소와 무중력지대 조성 사업의 중·장기적인 사업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정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업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업은 서울시민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권실태조사 용역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동 사업(수탁자 : 희망제작소)에서 4천 2백만원을 사고이월시켰음.
 - 동 사업은 2016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사고이월(2천 5백만원)시켰는바, 동 사업의 반복적인 사고이월은 불성실한 예산집행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㉒	다음연도 이월액 ^㉓		집행잔액 ㉔-㉕-㉖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7년	서울시민 인권철태조사	사무 관리비	197,025	182,265	139,515		42,750	14,759
2016년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사무 관리비	45,000	26,600	0		26,600	18,400

- “공유서울 확산” 사업은 공유허브를 공유 종합 플랫폼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3천 8백만원을 사고이월시켰음.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㉒	다음연도 이월액 ^㉓		집행 잔액 ㉔-㉕- ㉖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공유서울 확산	사무 관리비	357,970	347,841	309,286	0	38,555	10,128	
	공공 운영비	100,000	92,945	0	0	92,945	7,055	

-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명시이월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지출원인 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임.
 - 서울혁신기획관은 향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거나 적정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확보 및 철저한 예산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민간위탁 사업의 체계적 관리 필요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7건으로, 민간위탁금 예산 234억 2천 8백만원 중 불용액은 28억 1천 3백만원(불용률 12.4%)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3%)보다 상당히 높고 전년도 불용률(8.0%)보다도 4.0%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 : 천원)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기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시작일	종료일	위탁 구분					
계	-	-	-	23,428,593	21,295,867	20,199,852	2,813,566	12.0%
서울혁신파크 운영	'15.04.13	'18.03.31	신규	8,517,000	7,039,571	6,703,882	1,477,429	17.3%
	'18.04.01.	'20.12.31.	재위탁					
서울시 NPO지원센터 확대 운영	'13.11.15	'16.11.14	신규	2,371,377	2,284,474	2,090,365	281,012	11.8%
	'16.11.15	'19.11.14	재계약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12.08.23	'15.08.22	신규	5,218,436	4,908,037	4,825,138	310,399	5.9%
	'15.08.23	'18.08.22	재계약					
청년허브 운영	'12.12.14	'14.12.13	신규	4,539,000	4,522,001	4,069,695	497,864	10.9%
	'14.12.14	'17.12.31.	재계약					
	'18.1.1.	'20.12.31.	재위탁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	'16.07.15	'18.12.31	재계약	2,000,000	1,982,155	1,957,111	17,845	0.9%
청년공간 무중력지 대 설치 운영	대방	'17.1.1	'17.12.14	362,800	144,208	144,106	218,592	60.3%
		'18.1.22	'19.12.31					
	G밸리	'17.1.1	'19.12.31	재계약	419,980	415,421	409,555	10,425

○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천 4백만원을 변경사용(12월 8일)하였으며, 변경사용 후 추가집행소요가 발생해 '급량비'에서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120만원(12월 15일)을 변경사용하였음.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사업분야	사업명		감액	증액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52,698	△24,228		2017.12.8.	28,470	29,719	-1,249*
	자산및물품 취득비	5,347		24,228		28,893	27,697	1,196 (4.1%)

* 편성예산 대비 변경사용 규모가 소액(30%이하)이어서 집행부 승인없이 125만원을 자체 변경사용함.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2017년 5월 17일 센터 사무공간 이전 개소식에 따른 행사비 집행을 위하여 당초 예산 편성시 없었던 통계목 (행사운영비)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사용(3백만원)하였고, 서울마을상(賞) 제정·운영, 포상금 지급 및 마을주간 홍보를 위하여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마을공동체홍보·전파” 사업으로 5천 5백만원을 변경사용하는 등 총 4건에 6천 7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사업 구분	사업명		감액	증액				
운영비	사무관리비	176,328	△3,000		17-05-08	179,793	161,590	18,203 (10.1%)
				6,465	17-12-13			371 (12.3%)
	행사운영비	0		3,000	17-05-08	3,000	2,629	10,347 (29.7%)
운영비	공공운영비	41,215	△6,465		17-12-13	34,750	24,403	38,174 (7.1%)
사업비	서울형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585,826	△55,000		17-10-17	530,826	492,652	6,652 (1.3%)
	마을공동체홍 보·전파	428,400		55,000		483,400	476,748	543 (0.4%)
사업비	찾.동 마을활동가 전문인력성장지원	111,505	△2,551		17-10-26	108,954	108,411	2 (0.00%)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지원	96,000		2,551		98,551	98,549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전용한 예산은 재전용 또는 변경 사용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의 ‘사무관리비’의 경우 ‘행사운영비’로 3백만원을 변경사용(2017.5.8.) 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연도말(2017.12.13.)에 ‘공공운영비’에서 646만원을 재차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변경한 예산인 ‘사무관리비’는 1천8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는 법령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전용제한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음이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청년허브의 2017회계연도 민간위탁금 불용규모는 4억 9천 7백만원 (10.9%)으로 불용규모가 크고, 특히 “청년활동가교육” 사업의 불용률은 55.9%(1천만원)에 달했음.
- 또한, 지도점검 결과, 청년허브 운영위원회 미구성 등 사업관리 부적정, 사업관리 소홀(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의 공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의과정을 생략하고 담당자 단독으로 최종 검토 및 지원), 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한 장기간의 해외 출장 등 복무관리 소홀 등(참고자료 4 청년허브 지도점검 결과보고) 수탁사무의 불성실한 집행이 지적되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허브가 수탁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액	보조금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용률(%)
청년활동가 교육	20,000	18,000	7,945	10,054	55.9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대방)의 2017회계연도 민간위탁금 불용규모는 2억 1천 8백만원(60.3%)으로 사업비 일부를 미교부했다고는 하나, 불용규모가 크고, 수탁기관은 위탁금의 목적 외 사용(정원가신 업무추진비를 ‘교통비’, ‘주유비’로 사용), 직원 임금 선지급 및 지연 지급, 공공요금 납부 지연(참고 3 무중력 지대 대방동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참조) 등 민간위탁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한바 있음.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대방)는 ‘네트워크 고리’에서 수탁하고 있었으나, 수탁 사무의 불성실 집행 등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¹⁾하였고(2017년 12월 14일) 1개월간의 직영 운영을 거쳐 2018년 새로운 법인(오픈놀, 2018년 1월 22일)에 위탁한 바 있음.
-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기관이 수탁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수탁기관 변경 등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혁신센터의 2017회계연도 민간위탁금 불용규모는 14억 7천 7백만원 (17.3%)으로 불용규모 과도, 입주단체 관리 소홀(사용료 미납단체38단체, 4천 만원 규모), 언론의 비난(2017년 특정감사 결과 수탁법인이 센터장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법인이사회 심의시 의결정족수 미달임에도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편법행위 관련) 및 수탁중 법인 이사들의 퇴임 등의 무책임한 사유로 협약 해지 요구 등 수탁사무의 불성실한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또한, 서울혁신센터의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혁신파크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2017년 12월 28일에 19개 품목 2,100개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불용방지 목적으로 무리하게 예산집행을 한바있음.

1) **협약 해지 사유** : 수탁기관은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7년 상반기 지도점검 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함에 따라 정상적인 공간 운영이 불가하여 위탁협약 해지통보(17. 9.14.), 협약해지(17. 12.14.)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7회계연도 민간대행사업비(1단계조성 공용공간 사무집기 구매 관련) 집행 현황 〉

(단위:천원)

연 번	품명	집행 계획		집행 내역			용도	집행액	잔액			
		예산액	수량	구매일	단가	수량						
계 (2,100개 32대 26식 77set 862㎡ 23.8m) / 600,000천원								600,000	0			
1	가구	소파	258,000	2개	12.28	726	2개	9,15동	263,426	0		
		메트리스		2개		124	2개					
		침대		2개		366	2개					
		응접탁자		2개		129	2개					
		사물함		4개		157	4개					
		접이식 의자		455개		185	455개					
		책상		4개		161	4개					
		책상		224개		153	224개					
		회의용탁자		5개		303	5개					
		회의용탁자		3개		229	3개					
		회의용탁자		8개		360	8개					
		이동형과일서랍		228개		123	228개					
		OA칸막이		99개		6	99개					
		OA칸막이		141개		65	141개					
		OA칸막이		140개		80	140개					
		작업용 의자		228개		218	228개					
		수강용탁자		111개		332	111개					
강연대	2개	188	2개									
2	가구	컴퓨터 데스크	33,000	62개	12.28	91	62개	9동 전략공 간	16,330	0		
		책장		42개		107	42개					
		책장		32개		147	32개					
		액세서리		74개		21	74개					
		의자		16개		155	16개	9동			16,492	0
		테이블		16개		207	16개					
		의자		32개		165	32개					
		의자		30개		181	30개					
3	어닝	어닝	22,000	12	12.28	1,783	12식	9동1층	21,335	0		
4	멀티비전	SINAGE	22,000	9set	12.06	2,442	9set	9, 15, 홈베이 스동	11,000	0		
					12.28				10,978	0		
5	수동현수막 게시대	현수막걸이대	6,000	1식	12.28	2,376	1식	9,15동	12,144	0		
				1식		1,991	1식					
				1식		1,881	1식					
6	전동현수막 게시대	현수막바텐	5,000	2식	12.28	1,551	2식	9,15동	12,144	0		
				1식		2,596	1식					
				3개		66	3개					
7	블라인드	썬스크린	22,000	227㎡	12.28	25	227㎡	9동 2층 이상	21,809	0		
		썬스크린		266㎡		26	266㎡					
		썬스크린		260㎡		25	260㎡					
		썬스크린		109㎡		25	109㎡					
8	오픈 키친 가구	싱크대	22,000	1식	12.28	1,980	1식	9, 10, 홈베이 스 동	21,780	0		
		오픈키친(양면)		1식		2,750	1식					
		오픈키친(양면)		1식		3,080	1식					
		오픈키친(벽면)		1식		3,960	1식					
		싱크대		1식		1,980	1식					
		싱크대		1식		2,970	1식					
		작업대		1식		880	1식					
		오픈키친		1식		4,180	1식					

연 번	품명		집행 계획		집행 내역			용도	집행액	잔액
			예산액	수량	구매일	단가	수량			
9	게시판	벽부착형	16,500	90개	12.28	141	90개	9동	16,500	0
		벽부착형		4개		196	4개			
		이동식		5개		284	5개			
		기동부착		16개		102	16개			
10	중량랙 등 창고물품	중량랙	20,000	20set	12.28	387	20set	15동 창고	13,750	0
		중량랙		19set		316	19set			
11	키오스크 외	KIOSK	10,000	3대	12.28	2,927	3대	9, 15동	10,945	0
		DID		5대		343	5대			
		브라켓		5대		90	5대			
12	작업대 외	작업대	18,000	8개	12.28	713	8개	15동 작업장	10,628	0
		수납장		6개		371	6개			
		수납장		3개		225	3개			
		벽면		23.8m		85	23.8m			
13	가전제품	양문형 냉장고	10,000	4대	12.28	2,170	4대	9동	14,986	0
		일반 냉장고		1대		580	1대			
		전자레인지		4대		99	4대			
		노트북(NT300E5L)		5대		790	5대			
		노트북(NT500R5N)		1대		1,380	1대			
14	천창 FTS	FTS시스템	10,000	4set	12.28	2,677	4set	9동 5층	10,708	0
15	빔, 음향장비	WUXGA 초단초점 빔프로젝터	18,000	1대	12.28	5,903	1대	9동 3층	19,360	0
		HDMI 무선 전송 시스템		1대		1,833	1대			
		오디오 분리 시스템		1대		1,833	1대			
		8ch 스피커 PA 음향 시스템		1set		6,985	1set			
		벽부형 조정 콘솔시스템		1set		2,805	1set			
16	다목적실 조명	매입형 및 일반 LED(14m)	22,000	2set	12.28	723	2set	15동	21,450	0
		DALI 디밍제어 및 AMBIANCE LED(7M)		1set		2,373	1set			
		DALI 디밍제어 및 PAR LED SET(7M)		1set		2,923	1set			
		DALI 디밍제어 및 SPOT LED SET(7m)		1set		2,373	1set			
		DAIL 디밍 콘트롤 콘솔		1set		1,273	1set			
		3중 일반형 LED 조명 SET(21m)		1set		833	1set			

연 번	품명		집행 계획		집행 내역			용도	집행액	잔액
			예산액	수량	구매일	단가	수량			
		DALI 디밍제어 및 AMBIANCE LED SET(7m)		1set		2,373	1set			
		DALI 디밍제어 및 PAR LED SET(7m)		1set		2,923	1set			
		3중 일반형 LED조명 SET(9m)		1set		613	1set			
		DALI 디밍제어 및 AMBIANCE LED SET(3m)		1set		1,273	1set			
		DALI 디밍제어 및 PAR LED SET(3m)		1set		1,823	1set			
		객석용 저조도 LED 조명 SET(32m)		2set		613	2set			
17	빔, 스크린	WUXGA 초단초점 빔 프로젝터	15,500	1대	12.28	5,940	1대	15동 작업장	10,450	0
		150인치 전동 스크린		1개		1,100	1개			
		HDMI 무선 전송& 오디오 분리 시스템		1set		2,420	1set			
		프로젝터 연동2ch 스피커 시스템		1set		990	1set			
18	영상, 음향기기	2CH 무선앰프	2,000	1set	12.28	585	1set	9동	1,119	0
		1CH 무선앰프		1set		535	1set			
19	무대조명	LIGHT FLY DUCT & BOX	68,000	1set	12.28	9,091	1set	9동 5층	74,690	0
		MAIN & RD PANEL		1set		6,548	1set			
		R/D CONTROL CONSOLE		1set		2,306	1set			
		PIPING & WIRING		1set		7,810	1set			
		LIGHTING EQUIPMENT		1set		48,935	1set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6조²⁾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³⁾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민간위탁금’은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 대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바, 이는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것임.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뿐 아니라 그 사업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울혁신기획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수탁기관은 자의적인 사업 변경 및 과도한 불용, 예산전용 및

2)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①~⑥ 생략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3)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사용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하여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추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제도개선 필요 사업

1) 민간단체별 보조금 예산의 관리 철저

- 2017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공유 서울 확산”, “비영리민간 단체공익 활동지원” 사업 등의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총액은 41억 4천 8백만원으로, 이 중 39억 8천 2백만원(96.0%)을 집행하고, 1억 6천 5백만원의 (4.0%)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부당집행액은 640만원 수준임.

(단위 : 천원)

보조금 사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반납액
계	4,148,296	3,982,663	165,633	6,453	6,453	159,515

※ 참고 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참조

-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부당 집행액이 있는 단체가 2017년 총 교부 단체 180개 중 47개 (26.1%)나 있고, 집행잔액이 20%이상이나 되는 단체는 16개이며, 집행잔액이 90%이상 되는 단체(한중문화예술교류협회)도 있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각별한 주의와 예산집행 관련 사전교육 강화 및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보조금 부당집행 단체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반납액
1	세븐픽처스	공유서울 확산	5,000	4,993	6	11	11	6
2	Good Job	비영리민	10,000	9,998	1	308	308	1

	자립생활센터							
3	GPYC KOREA		17,000	16,994	5	139	139	5
4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21,000	20,901	98	4	4	98
5	교육희망네트워킹		15,000	14,904	95	130	130	95
6	나눔과나눔		17,000	16,611	389	201	201	389
7	다문화종합복지센터		15,000	14,771	228	111	111	228
8	대한불교청년회		15,000	10,090	4,909	16	16	4,909
9	드림빅연구소		15,000	14,681	318	60	60	318
10	모금가클럽		29,000	28,947	53	37	37	53
11	문화재 환수 국제연대		15,000	14,971	28	56	56	28
12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20,000	19,318	682	262	262	682
13	비움과채움		20,000	18,702	1,297	4	4	1,297
14	생각나무BB센터		12,000	11,763	236	14	14	236
15	생태공감		13,000	12,860	140	550	550	140
16	서울YWCA		13,000	12,920	80	210	210	80
17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21,000	19,190	1,809	51	51	1,809
18	서초커뮤니티네트워크		14,000	13,998	1	86	86	1
19	소비자와 함께		11,000	10,979	20	92	92	20
20	소원		12,000	11,881	118	1,125	1,125	118
21	시각장애인가족회	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20,000	19,456	543	51	51	543
2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4,000	11,997	2,002	380	380	2,002
23	안전모니터봉사단서울시연합회		17,000	16,196	803			803
24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		20,000,000	19,858	142	1,155	1,155	142
25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0해		20,000	20,000	0	98	98	
26	옴김		11,000	2,688	8,311	19	19	8,311
2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2,000	21,261	738	5	5	738
28	이음세움나눔터		15,000	14,639	360	46	46	360
29	인문학카페		10,000	9,955	44	80	80	44
30	자전거21		16,000	13,220	2,779	217	217	2,779
31	재미있는재단		16,000	15,746	253	79	79	253
32	주거복지연대		15,000	14,868	131	226	226	131
33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15,000	14,994	5	35	35	5
34	한국방법기동순찰대중앙본부		11,000	10,341	659	101	101	659
35	한국백혈병환우회		10,000	9,812	187	4	4	187
36	한국역사문화교육원		19,000	19,000	0	8	8	
37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12,000	11,600	400	18	18	400
38	한국차문화협회		14,000	13,998	1	1	1	1

39	한반도평화포럼		15,000	14,641	358	16	16	358
40	환경문화연대		14,000	13,666	333	50	50	333
41	환경정의		21,000	18,263	2,736	18	18	2,736,
42	휴먼아시아		9,000	8,257	742	10	10	742
43	희망먹거리네트워크		21,000	21,000	0	40	40	
44	NPO교육센터		50,000	49,920	79	180	180	79
45	민달팽이유니온		45,000	37,341	7,658	10	10	7,658
46	에너지정의행동		65,000	51,210	13,789	43	43	13,789
47	노들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19,625	19,437	187	84	84	187

<보조금 20%이상 미집행 단체 현황>

(단위 : 천원)

번호	기관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반납액	반납률 (%)
1	상상우리	공유서울 확산	8,000	4,827	3,173	3,173	39.7
2	건강세상네트워크	비영리민간 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17,000	8,259	8,740	8,740	51.4
3	대한불교청년회		15,000	10,090	4,909	4,909	32.7
4	돈보스코정보문화센터		11,000	7,215	3,784	3,784	34.4
5	롤링주빌리		13,600	4,487	9,112	9,112	67.0
6	생태지평		11,000	8,622	2,377	2,377	21.6
7	서영사랑나눔의복지회		20,000	10,620	9,379	9,379	46.9
8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11,000	7,820	3,179	3,179	28.9
9	소비자시민모임		12,000	9,486	2,513	2,513	20.9
10	옴김		11,000	2,688	8,311	8,311	75.6
11	평화의친구들		15,000	10,900	4,099	4,099	27.3
12	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16,000	12,385	3,614	3,614	22.6
13	한국피해자지원협회		15,000	11,081	3,918	3,918	26.1
14	한국환경교육협회		14,000	9,430	4,569	4,569	32.6
15	한중문화예술교류협회		12,000	643	11,356	11,356	94.6
16	에너지정의행동		65,000	51,210	13,789	13,789	21.2

2) 성인지 결산서 성과목표 설정 및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 성인지결산서는 성인지예산의 집행결과 및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 성인지예산 편성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결산서 작성시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 감사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서울혁신기획관은 결산서에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을 누락한 사업이 5개 사업이나 되는바, 이는 성인지예산사업의 미흡한 관리를 반증한다고 하겠음.

〈성인지 결산서에 성과목표를 누락한 사업목록〉

연번	실국	사업명
1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2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3	서울혁신기획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4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5	서울혁신기획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

* 2017회계연도 결산감사의견서 191쪽 재구성

※ 성인지결산제도는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의 작성 근거조항이 마련되었고, 2013회계연도부터 작성 및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또한, 결산감사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서울혁신기획관의 성인지 성과 목표 및 지표의 부적절한 설정으로 양성평등 또는 성차별 개선과 관련한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바, 성인지 예산과 결산의 명확한 숙지를 바탕으로 성인지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시, 양성평등과 성차별 개선에 부합하는 적절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 성인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 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성인지결산서의 성과목표와 효과분석 사례〉

실국	사업명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서울혁신기획관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과목표> 청년의 건강한 금융생활과 삶의 자립 도모 <효과분석>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u>불특정다수로 효과 분석 없음.</u>

* 2017회계연도 결산감사의견서 192쪽 재구성

마. 예산불용 과다 사업 검토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2%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3%)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협치와 혁신을 강조하는 서울시 정책기조에 맞지 않게 “서울혁신파크 운영”사업(사무관리비)에서 2억 5백만원(43.8%), 협치정책 토론회 미개최 등으로 인해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사무관리비)에서 2억 7천 2백만원(41.8%)을 불용처리했고,
- 사업기간 대비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우려⁴⁾대로 예산의 불성실 집행으로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민간경상보조)”에서도 15억 5천 8백만원(33.5%)의 예산을 불용처리했으며,
- 사업의 치밀한 사전 설계 미흡 등으로 인해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에서 1억원(66.7%)을 불용처리했고,
- 청년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을 선도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청년층 긴급 생활안정 및 대환대출 자금 이차지원” 사업(이차 보전금)에서 3억 4천

4) 제271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발췌

○**조규영 위원** 그리고 이 추진과정을 보면 1월에는 계획을 수립해요. 2월에 대상자 모집을 해요.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수행해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 단체가 10억의 예산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9개월이에요. 9개월 동안 10억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억짜리 프로젝트가 한 달 동안에 기획이 돼야 돼요. 네?

○**조규영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우리 현실적으로 보시자고요, 현실적으로. 1월에 이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모집을 2월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게 나 혼자 기획하는 사업도 아니고 팀을 구성을 해야 돼요. 팀도 구성하고 사업도 구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가 흔히 지원했던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에요. 10억짜리 사업이에요. 게다가 그것을 몇 년을 추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업을 기획하는데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기획도 해야 되고 팀도 짜야 되고 제안서도 내고 제안을 받고, 제가 보기에 이게 시간적·물리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3월부터 9개월 동안 1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요.

○**조규영 위원** 제가 좀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도저히 실현가능하지도 않고요, 이 사업은 정말로 정말로 서울혁신기획관님 임기 중에 오점으로 남는 사업이 될 겁니다. 아니 10억짜리 프로젝트를, 그것도 자기 혼자 기획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해야 되는 사업을 며칠 동안 기획해서 며칠 동안에 심의를 받고 선정을 받고,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로 이것은 예산낭비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중략)

1백만원(56.6%), 청년수당 대상자 추가 모집 미실시 등으로 “서울 청년활동보장” 사업의 ‘기타보상금’ 8억 8천 1백만원(5.9%)을 각각 불용처리했으며,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와 맞지 않게 “마을공동체종합 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금’ 3억 1천만원(5.9%),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2천 2백만원(2.1%)을 불용처리했고,
-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게 “우리동네 행복발전소 한울타리 조성(주민참여)”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4천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6천만원 전액(100%)을 불용처리했으며,
- 사업의 사전 준비 미흡으로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 조정” 사업(사무관리비)에서 3천 3백만원(28.2%)을 불용처리했고,
- 민간위탁기관의 예산의 불성실 집행으로 인한 “서울혁신파크 운영(민간위탁금)” 14억 7천 7백만원(17.3%), “서울혁신파크 운영(사무관리비)” 2억 5백만원(43.8%)을 각각 불용처리했음.
- 부서별로 살펴보면, 청년정책담당관은 14개 사업(345억 3천 2백만원) 중 20억 1천 2백만원을 이월시키고, 44억 1천 4백만원(12.8%)을 불용처리 하였고, 성과목표(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 수) 달성도도 75%에 불과하였음.

부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17년 목표	'17년 실적	달성도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도 청년정책 수립 및 청년활동 지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 수	420명	317명	75%

- 갈등조정담당관은 5개 사업(3억 7천 6백만원) 중 5천 1백만원(13.6%)을 불용처리하였고, 인권담당관의 11개 사업(13억 8천 6백만원) 중 4천

2백만원을 사고이월시키고, 1억 1천 9백만원(8.6%)을 불용처리했으며

- 지역공동체담당관은 24개 사업(334억 5천 5백만원) 중 14억 6백만원을 이월하고 12억 3천 5백만원(3.7%)을 불용처리하였고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0B0C)	불용률 (%)
사회혁신담당관	41,486	33,531	4,813	3,142	7.6
민관협력담당관	5,431	4,806	0	625	11.5
지역공동체담당관	33,455	30,813	1,406	1,235	3.7
청년정책담당관	34,532	28,106	2,012	4,414	12.8
갈등조정담당관	376	325	0	51	13.6
인권담당관	1,386	1,224	43	119	8.6

- 2017년 성과 목표 달성도도 54%에 불과한바, 부서별로 2017회계연도의 사업을 책임감있게 성실히 수행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부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17년 목표	'17년 실적	달성도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회복 체계적 지원	주민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	50건	27건	54%

- 서울혁신기획관은 ‘협치, 시민참여, 혁신파크, 공유, 마을공동체, 청년정책, 갈등 관리 등이 서울시의 중점추진사업 내지는 핵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없이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고 불성실한 사업 집행 및 치밀한 사업설계 부족 등으로 과도한 예산불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향후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실소요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여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 심사시 삭감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보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억원이상 또는 20%이상 불용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무 관리비	468,100	262,967	205,132	43.8%	○ 시설관리 분야 분리위탁 미추진으로 인건비 관련 경비 등 불용
서울혁신파크 운영	민간 위탁금	8,517,000	7,039,571	1,477,428	17.3%	○ 시설관리 분야 분리위탁 미추진으로 인건비 관련 경비 등 불용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26,822,252	21,633,475	707,157	2.6%	○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감리비	1,497,203	935,623	381,344	25.5%	○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무 관리비	653,465	380,594	272,870	41.8%	○ 협치관련 토론회, 포럼 등 시민대상 행사가 대통령 탄핵에 따른 19대 대선 실시로 지체 및 미집행 됨(100백만원 중 9백만원 집행), 협치사업 조사용역비 75백만원은 서울연구원 자체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비 전액 미집행
서울시 NPO지원센터 확대 운영	민간 위탁금	2,371,377	2,091,427	280,949	11.8%	○ 낙찰차액 및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임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150,000	50,000	100,000	66.7%	○ '16.11.18자 성미산 부지 토지 취득으로 사업기간 이월
마을공동체중합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5,218,436	4,908,037	310,399	5.9%	○ 낙찰차액 및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마을생태계 조성)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5,977,800	5,854,966	122,834	2.1%	○ 낙찰차액 및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임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700,000	3,352,007	347,993	9.4%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임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우리동네 행복발전소 한올타리 조성(주민참여)	자치단체 자본보조	140,000	0	140,000	100.0%	○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대상지 매입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른 대상지를 모색하였으나 적절한 사업 추진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포기 사유를 제출(강서구 기획예산과013162, '17.10.30.)
	자치단체 경상보조	6,000	0	6,000	100.0%	
청년층 긴급생활안정 및 대환대출자금 이자 지원	이차보전금	603,000	261,856	341,143	56.6%	○ 당초 사업설계 시 보다 실제 접수자가 적어 이차보전금 집행 잔액이 발생
서울청년활동보장	기타보상금	15,000,000	14,119,000	881,000	5.9%	○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발생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650,000	3,091,602	1,558,397	33.5%	○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행절차(TF구성/운영, 집행지침마련, 주관기관 선정, 선정심사(3개월 소요) 등) 이행으로 보조금 사용기간 축소 및 교부액 조정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금	4,539,000	4,041,135	497,864	11.0%	○ 낙찰차액 및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299,000	169,512	107,348	35.9%	○ 대체부지 변경에 따른 신축 설계안 마련, 청년단체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지역주민 협의 도출)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으로 사고이월 추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196,000	3,819	192,180	98.1%	○ 대체부지 변경에 따른 신축 설계안 마련, 청년단체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지역주민 협의 도출)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으로 사고이월 추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782,780	553,762	229,017	29.3%	○ 대체부지 변경에 따른 신축 설계안 마련, 청년단체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지역주민 협의 도출)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으로 사고이월 추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시설비	1,398,000	250,319	130,012	9.3%	○ 대체부지 변경에 따른 신축 설계안 마련, 청년단체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지역주민 협의 도출)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으로 사고이월 추진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50,000	1,704	48,295	96.6%	○ 청년단체 의견수렴에 따른 위치(상암 DMC Soplex → 망원동)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시범운영비 예산절감 불용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조정	사무관리비	117,800	84,589	33,210	28.2%	○ 사업 정책 방향 설정이 늦어지는 등 갈등진단분석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불용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76,000	52,203	23,796	31.3%	○ 사업 선정위원회를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과 통합실시하여 참석수당, 운영경비 등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참 고 자 료 1

은평 한옥마을 마을회관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 ~ 2017. 12월
- 장 소 : 은평 한옥마을 내 커뮤니티(마을회관)
- 주관단체 : 은평구청
- 사업효과 :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주민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회관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마을주민의 교류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회관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한옥카페, 한옥키친, 한옥사랑방 등 마을협력공간 운영 및 주민대상 프로그램(한자서예, 한글서예 등)
- 소요예산 : 215,000천원 (단위 : 천원)

계	시 비		구 비	기 타 (민자유치)
	은평한옥마을 마을활력소	마을배움터 사업비 지원		
215,000	180,000	35,000	0	0

□ 사업목적

- 상징성·특화된 사업추진으로 타 마을회관과 차별화를 구축하고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 공간 조성

□ 세부사업계획

- 세부계획(안)

구 분	활 용 방 안	비 고
주민참여·교류 공간	한옥카페, 한옥사랑방 등 운영	운영·관리자 채용
주민역량강화	한글서예, 한자서예 등 강좌 운영	

○ 세부지출내역

지출항목	소요예산 (천원)	산 출 근 거	비 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696	○ 마을회관 관리자 운영 ○ 인건비 1,609,300원×1명×10월 = 16,093,000원 ○ 월차수당 61,600원×1명×10월 = 616,000원 ○ 휴일근무수당 61,600원×1.5×1명×5일×10월 = 4,620,000원 ○ 4대 보험료 21,329,000원×11.1% = 2,367,520원	
사무관리비	8,222	○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183,500원×2회 = 367,000원 ○ 가스안전 점검 수수료 78,000원×2회 = 156,000원 ○ 소방시설 점검 수수료 455,000원×1회 = 455,000원 ○ 마을회관 안내리플릿 1,500,000원×2종 = 3,000,000원 ○ 각종 비품 구입 200,000원×10월 = 2,000,000원 ○ 무인경비 시스템 요금 224,400원(월사용료)×10월 = 2,244,000원	
공공운영비	12,880	○ 전기요금 180,000원×10월 = 1,800,000원 ○ 가스요금 240,000원×10월 = 2,400,000원 ○ 상하수도요금 60,000원×10월 = 600,000원 ○ 전화요금 48,000원×10월 = 480,000원 ○ 인터넷 통신 요금 30,000원×10월 = 300,000원 ○ 화재보험료 180,000원×10월 = 1,800,000원 ○ 청소관리 용역 550,000원×10월 = 5,500,000원	
행사운영비	49,200	○ 마을회관 행사 3,000,000×2회 = 6,000,000원 ○ 마을회관 프로그램 강사비 180,000×2명×2시간×6일×10월 = 43,200,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	○ 마을회관 운영관련 회의비 및 업무협의 등 100,000×10회 = 1,000,000원	
자산취득비	120,000	○ 주민참여공간 집기 등 60,000,000원×2식 = 120,000,000원	
합 계	214,998		

참고 자료 2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으로 지켜주세요!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포 마을활력소 조성공사 피해자 보상 조치**

1. 마포 마을활력소 조성공사(지역동동체담당관012365, 2017.10.26.) 관련입니다.
2. 마포 마을활력소 내에 위치해 있는 상가(제이피커피로스터스, 대표 박선혁)가 마포 마을활력소 조성공사 기간 동안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하고자 합니다.

가. 보상경위

- 1) '18. 2.26 ~ 27 : 폐기물 반출(반출시 상가 영업시간을 피해 진행)
- 2) '18. 3.6 : 터파기시 추가 폐기물 발생
- 3) '18. 3.13 ~ 14 : 폐기물 2차 반출(상가 영업시간에 진행)
- 4) '18. 3.13~ : 민원제기(구두 및 2회 면담 진행)
- 0) 공사 추진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 보상을 하기로 합의

나. 피해보상

- 1) 보상방법 : 임대료 감면
- 2) 보상대상 : 제이피커피로스터스 (대표 박선혁)
- 3) 보상금액 : 금4,290,000원 (금사백이십구만원)
0 공사기간('17.12.5 ~ '18 5.25)월 임대료 1,430,000원 × 3개월(집중공사기간 고려 산정)

붙임 : 감면결정에 대한 임차인 확인서 1부. 끝.

참고 자료 3

무중력지대 대방동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I 점검개요

추진근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민간위탁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점검)

점검기간

- 현장점검 : 2017. 7.10.(월)~7.11.(화) [2일간]
※ 점검인원 : 청년공간지원팀장외 3명
- 공문서, 홈페이지 검토, 보조금시스템 등 : 2016. 7.10.(월)~7.11(화)

점검대상 기관 현황

구 분	무중력지대 대방동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대방동)
규 모	지상2층 (연면적 : 398.5㎡)
개관일	2015. 4.28
운영시간	월~금(10:00~22:00), 토(10:00~16:00)
위탁기관	네트워크 고리 (대표: 김정찬)
협약기간	17. 1. 1. ~ '19.12.31.
사업내용	지역기반 청년활동 지원, 청년협력 및 커뮤니티 지원 등

점검내용

- 일반운영분야 : 회계관리, 고용관리, 정보공개, 시설관리 등
- 운영성과분야 : 인력투입, 사업과정·성과, 피드백(이용자 만족도) 등

II 점검결과

총 평

- 사업 초반 사업계획서 지연 제출 및 내용 부실(오·탈자, 산출근거 부족)

로 사업계획 승인('17. 3. 8.) 및 계약심사 완료('17. 6.29.) 지연에 따라 사업 시행 실적이 미미하여, '운영성과 분야'는 점검자체가 불가하였으며,

- 일반운영 분야 점검에서는 위탁금 목적 외 사용, 공공요금 연체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함

회계 분야

○ 위탁금 목적 외 사용

- 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을 위한 경비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을 추진함에 직접적인 업무 연관(관계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이 있는 사항에 집행하여야 하나, 대방동에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교통비·주유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통신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교통비·식비(전체 식사 제외)로 집행

(기간 : 17.1.1.~6.30, 단위 : 원)

구 분	집 행 액	목적 외 집행액	비고(집행용도)
총 계	3,231,630	2,297,59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59,100	959,100	교통비, 주유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65,550	765,550	통신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6,980	572,940	교통비, 식비

- ② 대방동 위·수탁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서울시 보조금을 사용하여 명함제작에 예산 집행('17. 2.20. 우00, '17. 4.25. 김00)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위·수탁협약서 제9조, 행정자치부 예규 제74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고용 분야

○ 직원 임금 지급 지연

- ① 네트워크 고리와 직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 상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나, 대방동에서는 1~6월까지 지급된 직원 임금을 최대 15일에서 최소 1일까지 지연 지급

(기간 : '17.1.1.~6.30,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일	실지급일	지연일수	비 고
1월	1월 25일	1월 25일	.	
2월	2월 24일	3월 10일	15일	
3월	3월 24일	3월 21일	.	선지급
4월	4월 25일	4월 26일	1일	
5월	5월 25일	5월 25일	.	송00팀장(6월2일 지연 지급)
6월	6월 23일	6월 26일	3일	

② 대방동 직원 '17. 1~6월 기간 내 4대 보험료 미납 및 퇴직적립금 미적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위·수탁협약서 제7조, 네트워크 고리 근로계약서 제6조

□ 기관운영 분야

○ 공공요금 지연 납부

① 대방동에서는 '17. 1~6월 기간 내 1공공요금(수도, 전기, 전화/인터넷)을 최대 20일에서 최소 1일까지 지연 납부 및 연체
[지연납부]

(기간 : '17.1.1.~6.30, 단위 : 원)

구분	해당월	부과금액	납부기한	지급일	비고
수도	5월	162,570	'17. 5.31.	'17. 6.20.	납부액(147,000)
전기	2월	1,902,090	'17. 2.28.	'17. 3.10.	납부액(1,504,906)
	5월	741,030	'17. 5.31.	'17. 6.12.	납부액(402,350)
인터넷	5월	146,650	'17. 5.25.	'17. 6. 8.	납부액(146,650)

[연체내역]

(기간 : '17.1.1.~6.30, 단위 : 원)

구 분	부과금액	납부금액	연체금액
수도	570,960	555,390	15,570
전기	5,939,750	3,365,069	2,028,681
전화	372,480	242,120	130,360
인터넷	1,450,110	967,050	483,060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위·수탁협약서 제6조

※ '17. 7.20. 공공요금 납부 완료

○ **대방동 운영위원회 미구성 및 사무편람(운영규정) 미승인**

- ① 대방동을 운영함에 중요한 정책결정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운영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해 정책결정 지연
- ② 대방동에서는 수탁사무의 처리부서·처리기한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하나, 승인요청 공문 미시행에 따른 미승인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위·수탁협약서 제5조, 제6조

○ **중요 사항(자료) 제출 지연**

- ① 네트워크 고리는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하나, 협약체결일('16.12.29.)로부터 6개월 이후인 '17. 7.10.에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권 원본 지연 제출
- ② 네트워크 고리는 '17년도 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업계획서(안)를 '17. 1.25.에 지연 제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위·수탁협약서 제5조, 제14조

기타 분야

○ **수탁기관(네트워크 고리) 변경사항 미보고**

- ① 네트워크 고리는 경영상 변동사항(법인 명칭, 대표자 변경 등)이 있을 시 '시'에 보고하여야 하나, '17. 6. 2. '사단법인 네트워크 고리'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미보고
- ② 대방동에서는 서울시 보조금 통장 개설 시 '네트워크 고리' 명의로 개설을 하여야 하나, '사단법인 네트워크' 명의로 개설하여 보조금관리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위·수탁협약서 제22조

참고 자료 4

청년허브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1

점검 개요

목 적

- 청년허브 재위탁 추진에 따라 그간 사업운영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성과, 개선방안 마련 등 제2기 청년허브 운영(2018.1.~2020.12.)에 적극 반영
- 청년허브 민간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주요 시설물, 물품, 사무실 등에 대한 점검 실시로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관리 및 보수, 변상 등 대응책 마련

점검사항

- 점검기간 : 2017.11.29.~12.6.(기간 중 3일)
- 점 검 자 : 정00(청년정책팀장), 박00, 류00, 최00
- 점검내용 : 사업운영 전반(추진실적 및 적절성, 복무, 인사, 물품, 회계 등)
 - 0 위탁사무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사업의 적절성, 각종 위원회 현황 등
 - 0 복무, 인사, 물품, 회계, 수입금 처리 현황 등 적정성, 보안 및 사고예방 계획 수립여부 등
 - 0 퇴사인원 및 사유, 직장교육(성희롱예방, 인권교육 등) 등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
- 점검방법 : 3인 1조로 청년허브 운영전반에 걸쳐 집중 점검
 - 0 자료 사전제출로 현장제출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 단축 및 지도점검 효율성 제고
 - 0 부적정 사례 발견(인지)시 관련자 사유서 및 확인서 징구 후 필요한 조치 이행
- 추진근거
 - 0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감독)
 - 0 청년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2

점 검 결 과

□ 총 평

- ◆ 청년허브는 12.12 개관 이후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을 위한 시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진로모색, 학습경험 ▲자립공존, 공간 활동 ▲ 사회협력, 이슈 공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 ◆ 각종사업은 운영규정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심의하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채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음
 - ✓ 민간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은 체계적 선정과정 없이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기획형으로 지원한 단체의 경우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지원근거도 미흡
 - ✓ 청년학교, 국제컨퍼런스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실시한 해외출장의 경우 목적과 예산 과목의 불일치, 특정직원의 장기해외출장, 출장 후 결과보고 미이행, 직원과 단체 대표 위주의 출장 등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마련이 시급하며, 잘못 지급된 출장비 회수 및 인사상의 조치 필요
- ◆ 청년허브의 각종 물품, 시설 등은 관련 법령에 맞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파손된 물건을 EPS실에 임의방치하고 물품도 일부 분실되는 등 물품 및 시설 관리 부적정에 따라 재물조사 실시 후 즉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 청년허브는 그동안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년허브 책임직(前센터장, 기획실장, 경영실장)의 사업 운영 소홀 등 직무태만에 따라 형식적 사업운영, 직원복무관리 및 물품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조치계획

- 조치기관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청년문화원)
- 조치사항 :
 - 0 인사상 조치사항 : 경고 1건, 주의 3건
 - 0 금전상 조치사항 : 회수 1건 1,577,510원, 변상 1건, 1,196,420원
 - 0 제도개선사항 : 연간 해외출장에 대한 사전 심의위원회 운영 등 3건
 - 0 현지조치사항 : EPS(서버관리)실 관리 소홀 1건

□ 사업운영부문

① 청년허브 운영위원회 미구성 등 사업관리 부적정

- 0 청년허브 운영규정에 따라 청년허브 운영계획의 수립,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청년허브 센터장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청년허브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청년허브 운영규정 제5장)
- 0 위원회는 당연직, 위촉위원, 청년활동단체, 협력단체, 내부직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연간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 11월말 현재까지 '17. 신규위원 등을 반영한 청년허브 운영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음 ※ '붙임2' 참조
- 0 이는 책임직(센터장, 기획실장, 경영실장)이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구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니 **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직원의 **인사상 조치(주의)**

② 민간청년활력공간 '우리동네 무중력지대' 사업 운영 부적정

가. 단체선정 부적정

- 0 민간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공간수요에 대응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2016년부터 청년허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단체에 대해 **최대 5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과평가 등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지원 하고 있음.
- 0 이에 따라 청년허브는 2017년도 연속지원단체 선정을 위하여 2016년도에 선정된 11개 단체 중 8개의 단체에 대한 연장심사를 위해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접수(2017.4.15.~4.21.), 현장방문(4.25.~4.26.) 및 대면심의(4.27.)를 통해 최종 8개 단체를 선정하여 **전체 30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음
- 0 하지만, **선정과정에서 '9ROAD', '이글루 망원'의 경우 5명의 심의위원 평균 점수가 69.2점**으로 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 협약서 제8조(사업비의 집행중단 및 협약의 해지)에 따라(70점 이

하) 사업비의 집행중단 및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사유없이 선정하여 각각 25백만원, 27백만원 총42백만원을 지원(5월)하는 등 단체선정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 협약서 제8조(사업비의 집행 중단 및 협약의 해지)

1. 추진기관은 다음 사안이 발생한 경우 협약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해 사업비의 집행중단 및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사업의 평가결과 “미흡(70점 이하)”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 특히, 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 신규(기획형)의 경우 선정을 위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들의 현장방문 및 서면심의를 통해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있어 사업의 적정성,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의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즉시 보완 조치하고 선정과정, 단체관리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관련직원은 인사상 조치(주의)

나. 사업관리 소홀

0 민간청년활력공간 선정단체는 청년활력공간 운영지침(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05129, 2017.5.12.)에 따라 최종 선정 결과 1월 이내 지원단체와 협의를 통해 공간운영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지원단체는 미션 수립 워크숍(가칭)에 참가하여 공간운영계획을 보완 및 확정한 후 청년허브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0 청년허브는 민간청년활력공간 지원단체 선정을 위해 ‘제안(지원단체)→심의 결정(청년허브)→사업 계획 승인요청(선정단체)→검토 및 지원(청년허브)’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에 필요한 공간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과정을 생략하고 담당자 단독으로 최종 검토 및 지원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 또한 지원단체 선정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주기적 방문 및 중간보고, 최종 결과보고’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의 내실화가 이루어 져야 하나 담당자의 방문 면담으로 갈음하는 등 사업관리를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어 민간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의 선정과 관리, 지원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직원복무 관련

○ 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한 장기간의 해외출장 등 복무관리 소홀

0 직원 해외출장은 사업목적에 맞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복무규정 등에

따라 출장이후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행하고 있으며, 청년학교 수입금 등은 청년학교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외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함에도 직원 해외출장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의 부적정 사용 발생

〈표1 : 청년허브 개인별 출장내역(2017.1.1.~11.30.)〉

연번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결과 보고서	출장비액 (원)	예산과목	비고
1	송00	4.14.~4.17.	일본	삶의 재구성 사전탐방	○	1,711,080	청년학교 현장탐방 및 캠프 진행비	0
2	송00	6.1.~6.12.	일본 이탈리아	기획탐방	×	1,577,510	활동가교육 기획개발자 양성과정 (수입금)	회수
3	송00 차00	6.11.~6.28.	핀란드, 독일	해외청년활동 및 정책관련 기관방문	×	3,633,601 3,096,321	국제컨퍼런스 현장탐방 및 캠프진행비	출장결과 보고서 보 완
4	김00 정00	7.21.~7.25	홍콩	청년학교 참여	×	551,703 578,403	청년학교 현장탐방 및 캠프 진행비	출장결과 보고서 보 완
5	송00	11.2.~11.9	일본	청년학교	×		청년학교 현장탐방 및 캠프 진행비	출장결과 보고서 보 완
6	서00 차00 최00 김00 ※ 학생(3명)참여	11.30.~12.3	일본	공공건축학교	×		청년학교 현장탐방 및 캠프진행비 (수입금)	출장결과 보고서 보 완

- 연간 해외출장계획은 사전에 수립하여 동일지역, 유사출장의 경우 연계하여 실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청년학교 수입금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청년학교 참가자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 추진
- 출장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표1 청년허브 개인별 출장내역'의 2~5번의 출장건에 대해 출장보고서를 즉시 보완조치 하고 출장의 목적과 결과보고가 상이할 경우 전액 회수 조치
- 송00(6.1.~6.12. 일본, 이탈리아)건은 출장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해당 월에 출장이 장기간(6.1.~6.28.)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6월 이후 현재까지 출장결과보고를 결행한 것은 잘못이니 해당 직원은 인사상 조치(경고)하고 잘못 지급된 출장비 금 1,577,510원(금일백오십칠만칠천오백일십원)은 즉시 회수조치

□ 물품관리부분

○ 시설 및 물품관리 부적정 운용

- 0 청년허브에서 운용하는 비품은 비품분류번호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재 후 현행으로 관리하고, 비품별 정수운용기준을 수립하여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등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0 이중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매년 12.31.기준으로 현황을 작성**하여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정비, 변상,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0 2016. 6.9. 불용처리⁵⁾ 보고(서울특별시 청년허브02998, 2017.6.9.)만 있을 뿐 2014.~2016까지 높낮이 히터 등 총18개 품목 56개의 비품, 장부가액 7,914천원의 비품을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내부보고 없이 **임의폐기**하였으며
- 0 비품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리본형 책상, 공기순환기**는 현재까지 분실된 상태로 분실품에 대해서는 즉시 **변상조치**(2종, 1,196,420원⁶⁾)하고 담당자는 인사상 조치(주의)

〈표2 : 비품분실현황(2017.12.12.현재)〉

연번	품명	취득일자	취득가격	내용연수	현재가액	정수	현품	차이
1	리본형책상	2013. 3.4.	194,000원	8	78,810	44	32	△12
2	공기순환기	2015.11.9.	178,470원	7	125,350	4	2	△2
계	2종	0	0	0	0	48	34	△14

- 0 EPS실은 청년허브의 주요 전기시설과 메인서버가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기기의 훼손과 고장 방지를 위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함에도 폐품 등을 임의 방치하는 등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었던 바 즉시 시정할 것

□ 직원교육부분

○ 직원인권교육은 다수의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0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직원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가, 병가, 출장 등의 직원은 교육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 0 이에 따라 직원의무교육인 인권교육의 경우 전직원이 참여(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강좌 개설, 교육확대** 등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5) 사무용책상 17개 네이버 기증물품, 기증재산가 4,250천원

6) 품목별 현재가액(내용연수에 비례한 연도별 감가상각한 가액) × 부족수량의 합

참고자료 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연번	기관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부당집행액	부당집행액반납액	집행잔액반납액	비고
계			4,148,296	3,982,663	165,633	6,453	6,453	159,515	
1	아이랑놀이짱	공유서울 확산	10,000	10,000	0			0	
2	외국인관광도시 민박협회		5,000	5,000	0			0	
3	선랩건축사사무소		8,000	8,000	0			0	
4	세븐픽처스		5,000	4,994	6	12	12	6	환수금
5	사단법인 코드		70,000	68,894	1,106			1,106	
6	코자자		10,000	10,000	0			0	
7	재능넷		8,000	8,000	0			0	
8	버스킹TV		10,000	10,000	0			0	
9	상상우리		8,000	4,827	3,173			3,173	
10	루아흐		8,000	7,979	21			21	
11	히든북		10,000	9,984	16			16	
12	에이유디 사회 적협동조합		12,000	11,930	70			70	
13	한국데이터하우스		8,000	7,985	15			15	
14	집밥		10,000	10,000	0			0	
15	은평e 품앗이		10,000	9,251	749			749	
16	팀스퀘어		1,800	1,800	0			0	
17	씨엘인포넷		15,000	15,000	0			0	
18	대안영상 문화 발전소 아이공		16,800	16,800	0			0	
19	에스엔지 유나 이티드		1,800	1,800	0			0	
20	세어하우스 우주		13,000	12,756	244			244	
21	리베라빗		1,800	1,800	0			0	
22	플레이플래닛		13,000	13,000	0			0	
23	조인어스코리아		10,000	9,997	3			3	
24	홍합밸리		14,400	14,039	361			361	
25	Good Job 자립 생활센터	비영리민 간 단체의 공 활 동 지 원	10,000	9,999	1	308	308	1	
26	GPYC KOREA		17,000	16,994	6	140	140	6	
27	지역사회교육실 천본부서울3지구		20,000	20,000					
28	S&Y도농나눔공 동체		16,000	16,000					
29	강동무료중식봉 사회		16,000	16,000					
30	건강세상네트워크		17,000	8,260	8,740	0	0	8,740	
31	겨레하나되기운 동연합		21,000	20,901	99	4	4	99	
32	경의선숲길지기		12,000	12,000					

33	교육희망네트워크	15,000	14,904	96	130	130	96
34	국제한국입양인 봉사회	11,000	10,997	3			3
35	굿피플인터내셔널	14,000	14,000				
36	그린피플서울본부	19,000	18,763	237			237
37	기초과학탐사 연구소	15,000	15,000				
38	나눔과나눔	17,000	16,611	389	201	201	389
39	낙태반대운동연합	12,000	11,900	100			100
40	놀이미디어교육 센터	22,000	21,761	239			239
41	다문화종합복지 센터	15,000	14,772	228	112	112	228
42	대한불교청년회	15,000	10,091	4,909	16	16	4,909
43	대한인명구조협 회	16,000	15,900	100			100
44	대한전문응급처 치협회	18,000	18,000				
45	돈보스코정보 문화센터	11,000	7,215	3,785			3,785
46	동물과 함께 행 복한 세상	19,000	19,000				
47	드림빅연구소	15,000	14,681	319	60	60	319
48	롤링주빌리	13,600	4,487	9,113			9,113
49	모금가클럽	29,000	28,947	53	37	37	53
50	무지개봉사단	16,000	16,000				
51	무지개세상	13,000	12,927	73			73
52	문화예술NGO예 술과 시민사회	20,000	20,000	0			0
53	문화재 환수국제 연대	15,000	14,972	28	57	57	28
54	물망초	12,000	11,357	643			643
55	미래소비자행동	16,000	15,686	314			314
56	밝은미래	15,000	15,000				
57	밸류가든	23,000	21,849	1,151			1,151
58	벽화랑	15,000	15,000				
59	보육나눔미연대	10,000	10,000				
60	북한민주화네트 워크	21,000	20,732	268			268
61	북한민주화청년 학생포럼	20,000	19,318	682	262	262	682
62	북한인권정보센터	13,000	13,000	0			0
63	북한체제트라우 마치유상담센터	11,000	10,562	438			438
64	비움과채움	20,000	18,702	1,298	4	4	1,298
65	사랑나눔의사회	12,000	12,000				
66	새빛	15,000	14,638	362			362
67	생각나무BB센 터	12,000	11,764	236	15	15	236
68	생태공감	13,000	12,860	140	550	550	140
69	생태지평	11,000	8,622	2,378			2,378
70	서영사랑나눔의 복지회	20,000	10,621	9,380			9,380
71	서울YWCA	13,000	12,920	80	210	210	80

72	서울국학운동시 민연합	13,000	13,000					
73	서울녹색어머니 연합회	20,000	20,000					
74	서울북부녹색소 비자연대	23,000	23,000					
75	서울서남지역사 회교육협의회	13,000	13,000					
76	서울시아파트입 주자대표연합회	21,000	19,190	1,810	51	51	1,810	
77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15,000	14,995	5			5	
78	서울외국인노동 자센터	18,000	16,468	1,532			1,532	
79	서초커뮤니티 네트워크	14,000	13,999	1	86	86	1	
80	성공적인통일을 만들어가는사람들	12,000	12,000					
81	성산장기려기념 사업회	11,000	7,821	3,179			3,179	
82	소비자시민모임	12,000	9,487	2,513			2,513	
83	소비자와 함께	11,000	10,980	20	92	92	20	
84	소원	12,000	11,881	119	1,125	1,125	119	
85	수영산생태문화 공동체	13,000	12,600	400			400	
86	스마일	20,000	19,820	180			180	
87	시각장애인가족 회	20,000	19,456	544	52	52	544	
88	시민방송	10,000	10,000					
89	시민사회단체연 대회의	14,000	11,998	2,002	380	380	2,002	
90	십시일밥	15,000	15,000					
91	아름다운다락방 미루	15,000	15,000					
92	아하열린교육센터	14,000	13,980	20			20	
93	안전모니터봉사 단서울시연합회	17,000	16,197	803	1	1	803	
94	어린이 교통안 전연구소	20,000	19,858	142	1,155	1,155	142	
95	억압받는사람들 의연극공간0해	20,000	20,000		99	99		
96	에코허브	19,000	19,000					
97	예지원	19,000	19,000					
98	옴김	11,000	2,689	8,311	19	19	8,311	
99	우리겨레하나되 기운동본부	13,000	12,967	33			33	
100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	22,000	21,262	738	5	5	738	
101	우리역사바로알 기	19,000	19,000					
102	우리장애인자립 지원센터	13,000	13,000					
103	울타리 봉사단	16,000	16,000	0			0	
104	위메이크코리아	13,000	13,000	0			0	
105	이음세움나눔터	15,000	14,639	361	46	46	361	

106	이주민방송		16,000	16,000					
107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16,000	16,000					
108	인권도시연구소		14,000	13,876	124				124
109	인문학카페		10,000	9,956	44	80	80		44
110	자전거21		16,000	13,221	2,779	218	218		2,779
111	재미있는재단		16,000	15,746	254	79	79		254
112	조각보		12,000	11,897	103				103
113	좋은마음하나회		15,000	14,913	87				87
114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13,000	13,000					
115	주거복지연대		15,000	14,868	132	226	226		132
116	지구촌사랑나눔		13,000	12,970	30				30
117	지금여기에		10,000	9,933	67				67
118	차별없는가정을 위한시민연합		16,000	16,000					
119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10,000	9,987	13				13
120	책읽는사회문화재단		13,000	13,000					
121	천사의열매복지회		11,000	9,800	1,200				1,200
122	청소년전문극단 진동		17,000	17,000					
123	초록봉사대		9,000	8,940	60				60
124	통일드림		15,000	14,100	900				900
125	통일을실천하는 사람들		12,000	10,061	1,939				1,939
126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16,000	16,000					
127	패트롤맘		16,000	15,801	199				199
128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15,000	14,995	5	35	35		5
129	평화나눔회		6,000	5,045	955				955
130	평화의친구들		15,000	10,901	4,099				4,099
131	평화통일시민연대		15,000	14,963	37				37
132	한국난임가족연합회		10,000	9,130	870				870
133	한국방법기동순찰대중앙본부		11,000	10,341	659	101	101		659
134	한국백혈병환우회		10,000	9,813	187	5	5		187
135	한국사회봉사연합회		11,000	11,000					
136	한국새생명복지재단		13,000	12,629	371				371
137	한국소아당뇨인협회		20,000	19,999	1				1
138	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12,000	11,952	48				48
139	한국역사문화교육원		19,000	19,000		8	8		
140	한국의료봉사회		12,000	12,000					
141	한국장애인국제		12,000	11,600	400	18	18		400

	예술단								
142	한국종합연예인단		10,000	9,472	528			528	
143	한국차문화협회		14,000	13,999	1	1	1	1	
144	한국청소년교육 연구원		15,000	13,120	1,880			1,880	
145	한국청소년 한마음연맹		16,000	12,385	3,615			3,615	
146	한국체험학습교 육협의회		15,000	15,000					
147	한국피해자지원 협회		15,000	11,082	3,918			3,918	
148	한국환경교육협회		14,000	9,431	4,569			4,569	
149	한반도평화포럼		15,000	14,642	358	16	16	358	
150	한옥문화원		12,000	12,000					
151	한중문화예술교 류협회		12,000	644	11,356			11,356	
152	해병대전우회중 앙회서울연합회		14,000	13,440	560			560	
153	홈리스행동		11,000	10,565	435			435	
154	환경과복지를생 각하는시민의모임		19,000	19,000					
155	환경문화연대		14,000	13,667	333	50	50	333	
156	환경정의		21,000	18,264	2,736	19	19	2,736	
157	휴먼서비스교육 협의회		10,000	9,150	850			850	
158	휴먼아시아		9,000	8,258	742	10	10	742	
159	희망먹거리네트워크		21,000	21,000		40	40		
160	NPO교육센터		50,000	49,920	80	180	180	80	
161	녹색미래		65,000	60,909	4,091			4,091	
162	마포공동체 라디오		50,000	47,200	2,800			2,800	
163	민달팽이유니온		45,000	37,342	7,658	10	10	7,658	
164	서울지역사회교 육협의회		30,000	29,996	4			4	
165	시민모임즐거운 교육상상		22,000	21,605	395			395	
166	어린이어깨동무		50,000	50,000					
167	에너지정의행동		65,000	51,210	13,790	43	43	13,790	
168	환경재단		50,000	49,800	200			200	
169	한국장학 재단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 원 사업	1,153,096	1,146,948	6,148	0	0	0	
170	사회연대 은행	건강한 금융생 활지원 위한 민력 활성 화	72,000	66,837	5,163	0	0	5,178	
171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		48,000	47,968	32	0	0	46	
172	(사)한국범죄피 해자지원중앙센터	범죄 피해 자 보 호지원 사업	30,000	30,000	0	0	0	0	
173	노들	인권	19,625	19,437	188	85	85	188	

174	장애인문화예술관	보호증 및 진활 지원 사업	19,400	19,399	1			1	
175	청소년교육전략21		13,600	11,252	2,348			2,348	
176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14,330	14,330	0			0	
177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14,135	13,409	726			726	
178	나섬공동체		14,680	14,680	0			0	
179	지구촌사랑나눔		14,980	14,780	200			200	
180	공약인권변호사모임		14,250	14,249	1			1	